



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 월간 뉴스레터

2016년 1월호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 Contents

### 회계정보

- 감사전 재무제표 사전제출 안내(금융감독원, 2015.12.30)
-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K-IFRS(회계기준원)
- 수주산업 공시기준 개정-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금융감독원, 2016.1.27)
-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금융감독원, 2015.12)

### 세무정보

- 2016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mailto: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http://www.crowehorwath.co.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5~8층, 10층 (우: 06179)

**QRM 본부**  
**02 - 2009 - 5718**
**회계소식 등**
**감사전 재무제표 사전제출 안내(금융감독원, 2015.12.30)**
**개요**
**■ 개요**

그간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 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제기

⇒ 이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명시되었으며, 회사가 감사前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함. (감사前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지정 등 행정조치 및 형사벌칙 부과 가능)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제출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출서류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 상장법인 :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 비상장법인 : 금감원 닷트 접수시스템( <a href="http://filer.fss.or.kr">http://filer.fss.or.kr</a> )
제출시점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개별F/S : 정기주총 6주전, 연결F/S : 정기주총 4주전)

**유의사항**
**■ 유의사항**

(회사) 회계전문인력 총원 등 자체적인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증선위에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특히, **12월 결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는 ‘15년 감사前 재무제표를 ‘16년에 증선위에 최초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 차질 없이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외부감사인) 외부감사 중인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 금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K-IFRS(회계기준원)**

- K-IFRS 1105 호** ■ **K-IFRS 1105 호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하기로 계획된 자산(또는 자산집단)을 소유주에게 분배하기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나 그 반대의 경우에 기존의 매각계획이나 분배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회계  
 처리함.
- K-IFRS 1107 호** ■ **K-IFRS 1107 호 (금융상품: 공시)**  
**(금융상품: 공시)**
- 양도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을 때 지속적 관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특정 지침을 추가
    - 양도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시점이나 금액에 따라 관리용역 수수  
 료가 결정되는 경우 지속적 관여에 해당
    - 양도된 금융자산의 불이행으로 고정 수수료를 전부 지급받지 못한다면 관리용  
 역 제공자는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임(예: 관리용역 제공자는 양도된 금융  
 자산의 미래성과에 지분을 갖는 경우)
  - 2012년 개정사항(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의한 추가적인 공시가 기준  
 서 1034호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다면 모든 중간기간에 대해 요구되는 것은 아님.
- K-IFRS 1019 호** ■ **K-IFRS 1019 호 (종업원급여)**  
**(종업원급여)**  
 복수 국가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단일통화(예: 유로)가 통용되는 경우 퇴직급여채무 측정  
 에 사용하는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총이 두터운 시장이 있는  
 지 여부는 통화수준 기준으로 결정함.
- K-IFRS 1034** ■ **K-IFRS 1034 (중간재무보고)**  
**(중간재무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기타 공시정보(예: 중간기간 영업활동의 계절적 특성)를 반드  
 시 중간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는 없으며,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예: 분기보  
 고서 내 'II. 사업의 공시')에 공시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함.
- 다른 곳에 공시된 정보를 중간재무제표에서 상호참조하여 표시하여야 함.
  - 다른 곳에 공시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  
 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K-IFRS 1001** ■ **K-IFRS 1001 (재무제표의 표시)**  
**(재무제표의 표**  
**시)**
- 중요성과 통합표시  
 중요성(Materiality) 적용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공시정보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 개  
 별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특정공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제공할 필요가 없음.

-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개별항목들을 나열한 문단 54에서 적어도 (as a minimum)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기준서가 제시한 재무상태표 항목이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표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
- 중간합계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할 때 유의할 사항을 구체화  
① IFRS에 따라 측정·인식된 항목으로 구성, 이해가능 하도록 표시 ③ 일관성, ④ IFRS가 요구하는 (중간)합계보다 더 강조되지 않음.
- 지분법적용자산의 기타포괄손익 표시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OCI)에 대한 지분을  
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② 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표시 하도록 명확히 함.

**K- IFRS 1016 (유형자산), 1041 (농림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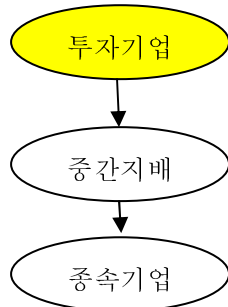
■ **K- IFRS 1016 (유형자산), 1041 (농림어업)**

- 생산용식물(Bearer Plants): 적용기준서 변경(1041 “농림어업”→K- IFRS 1016 “유형자산”),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변경  
(참고) 생산용식물(Bearer Plants): ① 수확물의 생산·공급에 사용, ②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 ③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 성숙전 생산용식물은 원가누계액(accumulated cost)으로 측정
-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에는 기준서1041 “농림어업”를 적용(원칙적으로 공정가치)

**K- IFRS1110, 1112, 1028**

■ **K- IFRS1110(연결재무제표), K- IFRS1112(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K- IFRS1028(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조건 중 일부 개정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음(공정가치 평가)
- 연결면제조건: 1. 중간지배기업, 2. 비상장, 3. 증권발행 목적으로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 없음, 4. 상위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문제제기)

상기 조건 1,2,3을 충족하고, 상위기업이 투자기업이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간지배기업은 연결을 면제 받을 수 있는가?

⇒ 상위기업이 투자기업이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기 그림의 중간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함.

- 투자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종속기업의 범위  
종속기업 자체가 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함.
-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방법  
투자자가 투자기업을 지배하거나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경우 투자기업이 자신의 종속기업 지배에 대해 공정가치로 평가한 경우 그 공정가치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 연결: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닌 한, 모두 즉 투자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  
⇒ 지분법: 투자기업이 평가한 공정가치를 그대로 인정함.

**K-IFRS 1114**  
(규제이연계정)

■ **K-IFRS 1114 (규제이연계정)**

-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과 관련하여 과거회계기준 적용 허용
- 규제이연계정 잔액 및 변동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 요율규제의 특성과 관련한 위험을 주석으로 공시

**K-IFRS1016(유형자산)** 및  
**1038(무형자산)**

■ **K-IFRS1016(유형자산) 및 1038(무형자산)**

-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명시
  - 일반적으로 수익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소비 외에 다른 요소도 반영하기 때문
  - (예외)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가 수익에 기초하여 표현되고, 경제적 효익의 소비와 수익의 상호관계가 매우 높은 경우

**K-IFRS1111(공동약정)**

■ **K-IFRS1111(공동약정)**

-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 관련 원칙을 적용  
기존 사업을 공동영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영업의 성립에도 적용

**K-IFRS1027 (별도재무제표)**

■ **K-IFRS1027(별도재무제표)**

**도재무제표)**

-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에 **지분법 적용 선택 추가**

**수주산업 공시기준 개정 -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금융감독원, 2016.1.27)**
**개정 개요**
**■ 개정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6.1.27.(수)에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을 확정함. **(시행일: 2016.1.1.)**

※ 개정된 회계기준

- K-IFRS 제1011호(건설계약),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용**
**▪ 종전 공시규정과 차이**

- **종전:** 재무제표 및 주석에 회사 전체(또는 영업부문별)의 누적공사수익, 누적공사원가, 미청구공사 등의 **합계만 공시**함.
- **개정:** **개별 공사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을 주석으로 공시(다만, 공사예정원가 변동금액 등은 영업부문별로 합계액 공시)

**▪ 공시대상회사**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원가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계산하는 건설계약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자본시장법 §159①, 시행령 §167①)

: 주권상장법인, 주권 외의 증권을 상장한 발행인, 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발행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 개별공시 대상 중요계약**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건설계약. 최초 적용 이후에 계약수익의 감액 등으로 공시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공시.

- **공시기간**  
중요 계약의 건설이 완료된 보고기간(회계연도말)까지 공시
- **공시항목**  
중요 계약별로 수익 ①계약을 구분할 수 있는 명칭, ②계약일, ③계약상 완성 기한·납품기한, ④진행률, ⑤미청구공사와 손상차손누계액, ⑥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을 공시함.

**공시사례: 중요 계약별 공시사항**

① 계약을 구분할 수 있는 명칭	② 계약일	③ 공사 기한	④ 진행률 (%)	⑤ 미청구공사		⑥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 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플랜트 부문	A						
	B						
	C						
	:						
건축 부문	가						
	나						
	다						
	:						

**중요 계약별  
공시에 대한  
예외**

- **중요 계약별 공시에 대한 예외**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보충 정보의 공시 요구

- **예외 허용 사유**  
상기 공시항목 중 ②계약일~⑥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1. 관련 법령(*)에서 비밀,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 ) 예: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계약에서 비밀,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특정 항목의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해당 항목의 일부나 전부를 공시하면 기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생략근거에 대한 공시**

예외 규정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상기 공시항목 ②계약일~⑥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할 경우에는 생략된 항목별로 아래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1. 중요 계약별 공시를 생략한 사실과 사유(객관적 근거 제시)
  2. 다른 방법(\*)으로 공시·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 (\*) 예: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등
3. 중요 계약별 공시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한다는 사실을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에 보고 여부

**보충공시**

계약별 공시 항목 중 ⑤ 미청구공사와 손상차손누계액 또는 ⑥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을 생략할 경우에는 생략된 정보를 **해당 계약이 속한 영업부문 기준으로 공시**

**공시사례 1: 중요 계약별 공시**

① 계약을 구분할 수 있는 명칭	② 계약일	③ 공사 기한	④ 진행률 (%)	⑤ 미청구공사		⑥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 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플랜트A	20xx...	20xx...	xx%	(*1)	(*1)	xxx	(xxx)
플랜트	20xx...	20xx...	xx%	xxx	(xxx)	xxx	(xxx)
;							

**(\*1) 미청구공사**

○○사(발주자)와 체결한 20× 1.1.8일자 계약서 4.1조에는 플랜트공사A의 미청구공사와 손상차손누계액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공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는 동 항목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이를 공시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높으며, 손해배상청구액은 계약금액의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한45.2(2)에 따라 해당 항목의 공시를 생략하였습니다. 회사는 생략된 공시 항목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분·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공개한 사실이 없으며, 이 항목을 20× 1년 1분기 재무제표의 주석에서 공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20× 1.5.10.에 감사위원회



에 보고하였습니다.

**공시사례 2: 영업부문별 공시**

영업부문	공사손실 총당부채	공사손익 변동금액	추정총계 약원가의 변동금액	미청구공사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플랜트 <b>부문</b>	xxx	xxx	xxx	xxx	(xxx)
건축부문	xxx	xxx	xxx	N/A	N/A

**영업부문별 공  
시조항 신설**
**■ 영업부문별 공시조항 신설**

계약별로 공시할 경우 공사에정원가를 가능할 수 있어 원가 노출 우려가 있는 정보는 영업부문별로 공시

**▪ 대상기업**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 영업부문별로 공시하는 항목**

공사손실총당부채, 공사손익,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은 해당 계약이 속한 영업부문(예: 건축, 플랜트, 선박 등)별로 공시함. 다만, 한편, 공사손익.추정총계약원가의 경우에는 그 변동 원인이 다양하나, 원인별로 구분하여 공시하기 어려우므로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수정에 따른 변동금액만을 공시하도록 함

**영업부문별 공시 예시**

영업부문	① 공사손실 총당부채	② 공사손익 변동금액(*)	③ 추정총계약 원가의 변동금액 (*)
인프라	x x x	x x x	x x x
건축	x x x	x x x	x x x
플랜트	x x x	x x x	x x x
선박	x x x	x x x	x x x
전력	x x x	x x x	x x x
기타	x x x	x x x	x x x

(\*)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 수정에 따른 변동금액(= 변동 전,후 금액의 차이)만을 표시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금융감독원, 2015.12)**

**추진배경**

■ **추진배경**

감사위원회(이하 감사포함)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고 회사 결산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는 등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감사위원회가 법규인식 부족 및 감독책임에 대한 제재대상 제외 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 내부감사간 기능연계 부족으로 회계의혹, 내부통제의 허점 등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이 공유되지 않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

이와 관련, 감독당국은 최근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를 발표하여 외부감사 과정에 있어서의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안내하고 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목적**

•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 과정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

**1 외부감사인 선임단계**

-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 외부감사 계약내용의 \* 적절성 검토  
\* 동종업종 감사경험, 감사투입시간, 감사일정, 등
- 감사계획 수립시 외부감사인과 사전협의 


**2 외부감사 실시단계**

- 외부감사인 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수행
- 외부감사인의 경고사항(Warning Letter)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회계정책, 추정, 재무제표 공시 등에 대한 전문가적 의구심, 수익인식관련 내부통제 미비점 등
- 외부감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3 외부감사 종료단계**

- 외부감사결과에 대한 검토
- 외부감사인의 권고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에 대한 평가
- 감사의견의 변형이 있는 경우 적절성 평가  
\* 적정의견에 강조사항 기재, 한정, 부정적, 의견거절 등

**4 사후관리 및 기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회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외부정보 수집 

**감사인 선임단계**

■ **외부감사인의 선임 단계에서의 역할**

- 감사위원회는 관련법령(외감법§4)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짐.

- 외부감사인 선임·승인과정에서 감사보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성을 평가하고 문서화하여야 함.

(\*) 동종업종 감사경험, 감사인력의 경력, 투입시간, 전문성, 중점감사분야 등에 대한 내용 및 외부감사인 교체 시 교체사유에 대한 검토 등

-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 및 당해 연도 세부감사계획 수립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협의

**감사실시단계**
**■ 외부감사 실시단계에서의 역할**

-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유**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및 회계기준 위반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공유(외감법§10)

- **외부감사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고사항(Warning Letter)을 받는 경우 외부감사인이 제기한 전문가적 의구심 또는 우려사항에 대해 검토

(\*) 감사인이 추정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등 중요사항에 대한 핵심감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회사 감사위원회에 보고(warning)하여 자체 검증을 유도

- 외부감사에 적절한 인력이 투입되는지 여부, 감사지원 인력의 자료제공이 원활히 수행되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평가- 필요시 자문회계사(Private Accountant) 고용**  
재무제표 작성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으며,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외부감사인이 보고한 경영진의 적격성이나 성실성에 관하여 외부감사인과 논의**

**감사종료단계**
**■ 외부감사 종료단계에서의 역할**

-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외부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감사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권**

**고사항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을 평가**

- 회사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평가 및 추정이 개입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정 및 기초자료 등에 대한 추가검토 수행. 감사의견의 변형 등이 있는 경우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수행

- **감사결과 주요 이슈사항 등에 대해 필요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과 공유**

미국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 발행 전에 감사결과(중요한 회계정책, 회사 재무보고의 품질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계속기업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를 보고받고 외부감사인과 협의하여야 함

**사후관리**

- **사후관리 및 기타**

-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권고안을 제시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도록 함.**
- **회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외부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고 필요시 해당 정보를 외부감사인과 공유**

**금융감독원**

**중징계 예정**

- **향후 대응방안- 금융감독원**

외감법 개정(§16)으로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회계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 및 감사위원회도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양정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 외감규정 시행세칙 사전예고 후 의견수렴 중이며, '16.2월 개정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될 예정

향후 감리 과정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 등의 회계감사 관련 감독소홀 여부를 판단할 때 동 모범사례 준수여부를 고려할 예정임.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00

**세 무 정 보**
**2016 개정세법 주요내용**

2016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 등(법인령 §50 의 2, 소득령 §78 의 3)**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업무사용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한도초과분은 이월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로서 800만원 초과금액은 이월

**주요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적용 제외대상)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li> <li><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li> <li><input type="checkbox"/>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li> <li>○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li> </ul> </li> <li>*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li> <li>**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li> <li>○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li> </ul>

**주요내용**

	<p>□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 필요</p> <p>□ 800만원 한도 적용대상인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p> <p style="padding-left: 20px;">○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p> <p>*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p> <p>**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li> <li>-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1천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li> </ul> <p>□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이월방법</p> <p style="padding-left: 20px;">○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사용금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p> <p style="padding-left: 20px;">○ 임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또는 처분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금액 중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 산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가 종료된 날 또는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잔액을 전액 손금산입</li> </ul>
--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등 구체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또는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운행기록 작성: 사업연도 전체 기간중 작성하되, '16년도의 경우 '16.4.1. 부터 작성('16년도는 '16.4.1. 이후의 업무사용비율 적용)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제 구체화(법인령 §50 의 2)**

-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적용대상 승용차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감가상각 의무화(감가상각 의제)

개 정 전	개 정 후
<input type="checkbox"/>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상각방법: 정액법 또는 정률법  <input type="checkbox"/> 내용연수: 4~6년(5년±25%)	<input type="checkbox"/>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input type="checkbox"/> 상각방법: 정액법  <input type="checkbox"/> 내용연수: 5년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관련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규정(법인령 §10, §120 의 17)**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일반법인)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연결법인)의 80%로 설정

○ 다만, 중소기업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적용 제외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input type="checkbox"/>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법인 <input type="checkbox"/>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input type="checkbox"/>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input type="checkbox"/>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input type="checkbox"/>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15.12.31. 까지 설립된 법인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예외범위 규정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소득세**
**(1)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단일화(소득법 §104①)**

개 정 전	개 정 후
<input type="checkbox"/>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 중소기업: 10%  ○ 중소기업 외 법인: 20%  ○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30%  * 현행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유가증권시장) 2%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4% 또는 4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4% 또는 10억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단일화 ○ 중소기업 - (대주주) 20% - (그 외 주주) 10%  ○ (좌 등)

<개정이유> 자본소득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법 §157④)**

개 정 전	개 정 후
<input type="checkbox"/>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 유가증권시장, 비상장주식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주주 범위 확대 ○ 유가증권시장, 비상장주식 - 1% 이상 또는 25억원 이상 ※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는 1년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스닥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분을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 억원 이상</li> </ul> </li>   <li>○ 코넥스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분을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 억원 이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스닥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이상 또는 20 억원 이상</li> </ul> </li>   <li>○ (좌 등)</li> </ul>
--	---

<개정이유>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6.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비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는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내국법인의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신설(소득령 §207 의 10)**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파견된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17%) 의무

개 정 전	개 정 후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p> <p>①(지급액 요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이 30 억원 초과</p> <p style="padding-left: 40px;">* 다수 외국법인의 경우 합산하여 30 억원 기준 적용</p> <p>②(규모 요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 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000 억원 이상</p> <p>③(업종 요건)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한함</p> <p><input type="checkbox"/> 파견 근로자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자</li> <li>□ 관련절차 및 증빙서류 등</li> <li>○ (원천징수)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li> </ul> </li> <li>○ (연말정산) 외국법인은 연말정산시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추가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국법인이 연말정산 대리 가능)</li> <li>* 제출서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국법인과 파견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li> </ul> </li> </ul>
--	---

<개정이유> 국내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16.7.1.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 3. 부가가치세

(1) 외화획득 재화·용역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부가령 §33)

개 정 전	개 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li> <li>○ 컨테이너수리업, 해운중개업 등</li> <li>○ 전문서비스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li> <li>○ (좌 등)</li> </ul>

*법무(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업) 회계 및 세무(회계사, 세무사업) 광고업, 시장조사업, 경영컨설팅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인력공급, 고용알선업, 사무지원서비스업 등	상호주의* 적용  *해당 외국에서 비거주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우리나라 거주자 등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경우 적용
--	---

<개정이유> 국내·국외사업자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 신설(부가령 §91 의 2)**

□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시까지 납부유예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 직전연도 수출(영세율)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 ◦ 3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2년이상 체납이 없을 것 등  □ 납부유예 적용 재화 ◦ 원재료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 납부유예 신청 및 적용방법 ◦ 세관장에 신청 → 납부유예 승인 → 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 적용 ◦ 납부유예액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 *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 납부유예액

<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16.7.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br/>(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mailto: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